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43
2025.8.18.



이주의 초점

트럼프의 시간은 지나고 CBP발 관세 시간이 다가온다

전문가 칼럼

달라지는 베트남, 세관 분야 주요 제도 개정

관세행정 안내

한·EU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동향

쟁점물품(MOTOR 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제8410호[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and regulators therefor)]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세번 바로잡기

유청단백 가수분해물

상식 밖의 상품학

달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면?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8월 18일(통권 제2143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04 트럼프의 시간은 지나고 CBP발 관세 시간이 다가온다

07 **Weekly News**

11 전문가 칼럼

유병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세관

달라지는 베트남, 세관 분야 주요 제도 개정

관세행정실무해설

19 **관세행정안내**

한·EU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27 **질의응답사례**

전기온수기의 수입요건

판례동향

29 **조세심판결정례**

쟁점물품(MOTOR 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41 **품목분류해설**

제8410호[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and regulators therefor)]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50 **세번 바로잡기**

유청단백 가수분해물

52 **상식 밖의 상품학**

달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면?

최신개정법령

54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63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트럼프의 시간은 지나고 CBP발 관세 시간이 다가온다

환적 대놓고 경고한 미국 … 원산지 따라 관세 천차만별

"상호관세 협상이 끝나고 곧 관세를 집행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수미 사무관은 기업들이 자사의 수출물품이 어떤 관세에 해당되는지, 원재료의 공급망을 세세하게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던 시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다.

관세청과 KOTRA는 8월 13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공유됐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원산지였다.



KOTRA 박민경 PM이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설명하고 있다(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KOTRA 지역통상조사실 박민경 PM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을 이용하는 환적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미국에서 발표한 만큼 우회수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호관세가 국가별 기본 관세에 추가되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회수출 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집행의 시간이 온다"

'최근 미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을 설명한 관세청 김수미 사무관은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미국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CBP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한 데다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민사에서 형사처벌로 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사기 및 관세 회피 수사에 투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가 하면 환적이 적발될 경우 제재방안을 공표(7.31. 조정된 상호관세 행정명령)하기도 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환적 적발 시 국가별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아닌 40%의 추가 관세율을 부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밖에 수수료, 세금, 추징금 등이 더해진다. 미 CBP는 6개월마다 우회수출을 활용한 국가 및 시설명단을 공표해 공공조달, 국가안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미국이 강조하는 '환적'이란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산 물품을 반입 후 단순 재포장해 수출하는 것에 한정	외국산 물품 반입 후 실질적 변형 없이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산 물품을 반입 후 단순 재포장해 수출하는 것에 한정'으로 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외국산 물품 반입 후 실질적 변형 없이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시각이다. 김 사무관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보는 환적은 후자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제 CBP는 비특혜원산지 검증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그가 예상한 집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CBP form28에 따라 수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30일간의 예비 결정 및 20일간의 추가 제출, 이어 최종결정, 납세 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서류로 증명하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CBP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미국 세관에 등록된 기업 이메일 주소부터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회사 홈페이지에 노출된 대표 이메일로 통지하기도 하는데, CBP의 이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돼 통지 자체를 확인하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기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복잡해 첫 서류 제출 단계에서 꼼꼼하게 대응하는 편이 낫다.

"이제 특혜는 끝났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은 특혜 아닌 '비특혜' 위한 것"

대부분 원산지 판정은 FTA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때 원산지는 우리 기업에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아니라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 원산지기준'으로 판정한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면 제3국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판례나 CBP의 사전결정문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만 판례와 사전결정문에서 CBP가 일관되게 말하는 포인트는 있다.



미국의 원산지기준과 판정 사례를 설명하는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박현혁 전문연구원(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박현혁 전문연구원은 "최종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가공이 제품의 본질을 변경시킬 정도로 의미있는지, 어느 국가에서 시행한 공정이 최종 제품에 기여하는 바가 큰지를 유심히 본다. 이에 따라 작업자의 수, 필요한 기술수준, 작업자의 교육수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도 모두 고려한다"고 말했다.

가령 운동기구를 생산하기 위해 200~500개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미국에서는 제품 디자인 및 도면설계, 최종조립을 거친 경우 대부분 원재료가 중국산이지만, 미국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의 범위와 복잡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제품 설계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 점,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정도, 작업자의 교육 및 세부 주의사항 등도 함께 고려했다.

램프처럼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물품은 통상 광원의 원산지를 원산지국으로 본다. 다만 태블릿처럼 광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PCBA가 여러 가지 있고 상호작용하는 물품이라면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한 바가 큰 곳을 원산지로 판정하기도 한다.

"2018년 이전만 해도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미국의 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수출기업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CBP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CBP CROSS(ruling.cbp.gov)에 공개된 사전심사 결정문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이날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원산지 판정기준이나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을 안내하고 기업의 품목별 관세율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관세청과 KOTRA는 8~9월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 타입 스마트 기기 '갤럭시핏'은 앞으로 통신기기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열린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가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은 통화 알림·거절, 메시지 및 이메일 수신 알림·확인, 측정데이터(심박수, 수면, 칼로리소모량) 스마트폰으로 전송, 전자시계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량 운전대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에어백 커버는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밖에 이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는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시(기본 8%), 트랙터 연결용 Ball Socket(기본 8%) 결정 내용도 포함됐다. | 김성은 기자 |

●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시계형 스마트기기 GALAXY Fit 3	제8517.62-1020호(양허 0%)
2	에어백 커버	제8708.95-9000호(기본 8%)
3	여성 컴포트 스니커즈	제6403.99-9000호(기본 13%)

연번	대상물품	결정
4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시	제9603.50-0000호(기본 8%)
5	트랙터 연결용 Ball Socket	제8708.99-9000호(기본 8%)
6	도료 원료 BENTONE	제3824.99-9090호(양허 6.5%)
7	불규칙 형상의 다포유리	제7016.90-9090호(기본 8%)
8	겨자무 혼합 가루	제2103.90-9090호(기본 8%)
9	사료 제조용 방향성 물질 혼합물	제3302.90-0000호(양허 6.5%)

가짜 수출입실적으로 상장 추진 ··· 관세청,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관세청이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수출입실적 조작 등 관련 범죄 단속 현황은 2021년 2,894억원(110건)에서 2023년 4,766억원(67건), 2024년 9,062억원(100건)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8월 12일 부산세관은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뺑뺑이 무역' 사건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6회에 걸쳐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여 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해 다시 수출에 활용했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A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여기에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3억원 수령, 7억원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인 수출입실적 조작은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 상장, 상장 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실적을 왜곡하는 행위다. B기업은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해 1,000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000여 명으로부터 500억원대 투자를 유인해 적발됐다.

두 번째 유형은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사익편취 행위다. 1,500억원대 목재 수입거래에 지배주주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63억원을

편취한 기업이 적발됐다.

세 번째 유형은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공공재정 편취 행위다. C기업은 저가 홈시어터 장비를 2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작해 수출한 후, 해당 실적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내 무역금융 대출 6,000여 억원을 편취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를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거쳐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하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무역위 사건 심판관 직권 신속 처리 가능해져 ··· 특허청, 특허심판 절차 개선

특허청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사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무역위원회 사건을 심판관 직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8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행정규칙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사건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우선심판을 심판관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또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심판 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 진행 상황 안내 및 구술심리심문서 증 통지 서식도 개정됐다. | 하구현 기자 |

구분	대상	요건	비고
우선심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제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청에 의함	청구인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청구인에 의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요건을 확인
신속심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사건 관련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 유도
	특허출원일(실용신안 등록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청에 의함	기한 도래 건과 관련해 청구인 의사를 반영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에 2,000억원 출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 조성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 8월 12일 수은에 따르면, 최종 펀드 규모 목표는 1조원 이상이다.

수은은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의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수은 홈페이지(www.koreaexim.go.kr)에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이후 운용사가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투자금융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돕고,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 해적 사건 급증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이 총 90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025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을 통해 밝혔다.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해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 사건 발생 건수는 2015년 107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년 동기(41건) 대비 71% 증가했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행위 등이 작년 13건에서 57건으로 급증했다"며, 아시아 해역 해적 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작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 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수부는 이에 대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세계 해적 사건 피해 중 승선자 피해는 작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67명이었으나 아시아 해역의 승선자 피해는 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일반·산적화물선이 41척, 액체화물운반선 21척, 컨테이너선 13척 순으로 건현이 낮거나 속력이 느린 산적화물선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운반 형태별로는 항해 중 71건(79%), 접안·정박 중 19건(21%) 발생했으며, 선박 피랍사건도 모두 항해 중에 발생했다.

| 하구현 기자 |

현지에서 보는 베트남 통관

8.11.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에게 수출입 절차와 규제 변화, 그리고 실무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들어봤다.

달라지는 베트남, 세관 분야 주요 제도 개정



유 병 하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세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최초 수교 이래 30년 넘는 기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협력과 발전을 이뤘다. 수교 당시 5억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은 2024년 870억달러로 170배가 넘게 증가했고, 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진출해 왕성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 접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출처 : 국무총리실)

특히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2022년 이래 3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5.8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베트남은 고속성장 국가답게 각종 제도·규정의 변화도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우리 수출입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과 교역하거나 현지에 진출해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베트남 세관 분야 주요 이슈 및 제도 개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관세당국 조직개편(2025.6.30.)

베트남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7월까지 당,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행정개혁을 실시했으며, 관세조직도 대대적인 조직 축소·통폐합이 이뤄졌다.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29/2025/ND-CP' 및 '재무부 결정 제382/QD-BTC'를 근거로 하며, 중앙의 '관세총국(Tong Cuc Hai Quan)'은 '관세국(CuC Hai Quan)'으로 축소되고, 기존 16개 부서도 12개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전국 35개 성·시의 지방세관국도 20개 지방세관 지부로, 국경, 공항만 등에 위치했던 약 200여 개의 산하 세관도 157개로 통합·조정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베트남 관세당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첨단 감시역량 강화, 행정 신속화를 목표로 하며,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개편과 함께 약 10~20% 내외의 세관공무원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등 일상 업무 전반에 걸쳐 단기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 내국수출입제도 개정(2025.7.1.)

베트남은 수출용원자재 면세제도,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제도 등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내국기업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Local Purchase)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해 관세, 부가세를 면제(환급)하는 내국수출입제도(On-Spot Import Export Regime ; Xuat Nhap Khau Tai Cho)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08/2015/ND-CP' 제35조에 근거해 시행돼 왔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내국수출입제도를 활용해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원가절감 혜택을 누려왔으나, 베트남 과세당국은 2023년 10월 이후 해당 제도가 시행령에 기반할 뿐 법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관세면제 폐지, 부가세 환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과 주베트남항공상공인연합회(KOCHAM) 등이 베트남 관계부처에 기업 입장을 수십 차례 전달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의 상시 의제로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베트남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베트남정부는 마침내 기존 입장을 바꿔 2025년 3월 '관세법'에 내국수출입제도 정의를 추가, 그동안 쟁점화됐던 '법률 근거 불명확'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회람했고, 6.24. 국회 표결을 거쳐 7월 1일부로 완화된 내국수출입제도가 다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국수출입제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근거	관세법 시행령(08/2015/ND-CP) 제35조	관세법 제47a조 [부가가치세법도 개정해 내국수출입 부가세 면제 규정 추가(제9조)]
혜택	관세, 부가세 면제	좌 동
관리 기관	세관 : 반출입절차 관리(내국수출입) 세무서 : 부가세 환급	좌 동
정의	1) **외국상인과 제조계약**, 베트남 생산 → 베트남 제3자(기업)에 판매 2) 수출가공기업(EPE)/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 3)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상인**과 베트남 기업 간 **매매계약**에 따라 제품을 가공(외국 원부자재 이용) → 베트남 제3자(기업) 전달행위	1) **매매·가공·임대·차용 계약 불문 허용** 2) 좌 동 3) **'베트남 주재' 요건 삭제** **매매·가공·임대·차용 계약 불문 허용**

외국상인의 베트남 주재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현지 진출 기업이 국내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환급)가 적용되고 심사절차도 신속히 진행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2023년부터 제도가 개정되기 전인 2025.6.30. 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부가세 환급 중단 조치를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3. 수입관세율(MFN) 인하 조치(2025.3.31.)

베트남정부는 '수출입세율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73/2025/ND-CP'를 발표, 2025.3.31.부터 자동차, 목재, 에탄올, 냉동 닭다리, 견과류, 과일 등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했다.

베트남정부는 관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내수진작, 산업 보호 등을 고려한 균형적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관세율 인하 품목 다수가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계획 발표(2025.4.2.)를 앞둔 시점에서 전격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협상 여력을 확보하고 무역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 품목별 관세율 인하 내용 ●

품 목	관세율(%)		비고
	기존 관세율	수정 관세율	
자동차 (HS 8703.23.63, 8703.23.57)	64	50	특정 모델 대상
자동차 (HS 8703.24.51)	45	32	특정 모델 대상
에탄올	10	5	
냉동 닭다리살	20	15	
피스타치오	15	5	탈각하지 않은 것
아몬드	10	5	
신선 사과	8	5	
체리	10	5	
건포도	12	5	
목재 및 목재가구 (옷걸이, 의자, 가구 등)	20~25	0	
액화천연가스(LNG)	5	2	
옥수수 알갱이	2	0	
대두박	1~2	0	

4.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 등의 수출입, 유통 금지(2025.1.1.)

베트남 관세국은 2025.1.1.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과 이들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원자재의 수출입 금지를 공포했다.** 이 조치는 사전 유예기간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제조해 수출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의 경영중단 위기를 불러왔다.

이 조치는 2024.11.30. 베트남 국회 결의안 제173/2024/QH15호를 근거로 하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2025.1.1.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과 이들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원자재의 생산, 판매, 수입, 보관, 운송, 사용, 소지, 광고 및 홍보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며, 내국인, 외국인 방문객 및 체류자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요지다.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조치로 인해 현지 진출한 전자담배 제조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수출계약 불이행에 따른 클레임, 생산시설 제3국 이전, 청산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사관 등 공관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베트남 국회,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중앙정부를 접촉해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설정, 수출용 제조업체 예외 적용 등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그 결과 **베트남정부는 '수출용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한적 통관·유통을 허용'하는 특별조치(2025.5.14.)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조치는 한시적이며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5. 소액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폐지(2025.2.18.)

베트남정부는 과세가격 VND 100만동(한화 약 5만 2,000원)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관세·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제도가 국내 생산자, 판매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고, 불요불급한 수입 수요를 유발하며, 밀수·조세회피 수단으로 전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정부 결정문 제01/2025/QD-TTG호(2025.1.3.)를 통해 2025.2.18.부로 제도를 폐지했다.

관세는 현행 「수출입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 면제된다.

베트남 재무부는 소액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폐지로 인한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위축, 기업·개인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면제한도를 높이는 새로운 소액수입물품 관세면제제도를 마련 중인데, 현재 '개인 또는 기관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입하는 VND 200만동 이하 물품'의 관세면제제도 도입을 정부(국무총리)에 건의했다. 이 면제제도는 면세 횟수·총액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액수입물품은 우체국 또는 특급탁송업체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액을 산정하고 세관에 신고, 납부한 후 수입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세관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통관절차가 빈번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원화(2025.5.5.)

베트남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베트남 관세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은 USD 기준 4,055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29.5%인 1,195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수입은 150억달러가량에 불과해 1,000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미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미국의 세관공무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목재 및 가구 제품, 대리석, 수산물 등 원산지 세탁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왔다.

미국·베트남 상호관세율 협상에 '원산지 관리 강화 및 우회수출' 문제가 의제로 선정될 만큼 베트남정부의 원산지 관리에 미국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4.21. '결정 제1103/QD-BTC호'를 공포해 원산지 관리 강화, 위법사항 벌금부과, 특정 위험품목에 대한 '적색채널(Red Channel)' 검사제도 등을 도입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도 일원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산업무역부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2025.5.5.부로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국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기존 2~5일 소요되던 것이 10~20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발급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7. 일시출국금지제도 규정 신설(2025.2.28.)

베트남정부는 조세·사용료·행정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해 각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임시)출국금지제도를 통합 운영하도록 '임시출국금지(Temporary Exit Suspension)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49/2025/ND-CP)'을 신설하고 2025.2.28.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다.

① 개인이나 법인, 협회 등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a) 조세·사용료·행정벌금 등(이하 '조세 등'이라 함)의 체납이 있어 (b) 과세당국으로부터 임시출국금지 예정통지를 받고 (c)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개인사업자, 법인·협회·조합 등의 대표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 등의 체납자
- VND 5,000만 동 이상의 조세 등을 120일 초과 체납한 개인·개인사업자
- VND 5억동 이상의 조세 등을 120일 초과 체납한 법인·협회·조합 등의 대표자

②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조세 등의 체납을 베트남을 떠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ⅰ) 해외로 이주하려는 베트남 국민, (ⅱ)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ⅲ) 외국인

과세당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전자납세계정(e-tax Transaction Account)을 통해 출국금지 예정사실을 통지하되, 계정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전자포털시스템(e-Portal)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하도록 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 취소통지를 출입국 당국에 전달해야 하며, 출입국 당국은 취소통지 접수 시 24시간 내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청산하거나 자금 사정으로 일시 체납 중이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사유 시 국적과 관계없이 개인·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출국 제한을 통해 조세 등의 납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8. 그 밖의 세관 분야 주요 동향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은 화학물질 통관절차 준수 여부, 품목분류 적정성, 면세 원재료 재고관리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추징, 벌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① 화학물질 통관절차 준수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통관과 관련해 엄격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미신고, 오기재, 무허가 등 화학물질 통관절차 위반 시 위반 건별로 최대 VND 4,500만동 또는 물품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1~3개월간 통관금지 처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베트남 세관은 화학물질 수입통관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절차 위반 확인 시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과 통관금지 조치를 병과해 처벌하고 있다.

② 품목분류 분쟁

최근 베트남 세관은 통관후조사, 수출입통관심사 시 HS 품목분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 부분품 등의 경우에도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차가 큰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수출입요건 대상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식품류, 섬유 및 의류, 철강류, 운동(유희)용품, 가구류 등의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베트남 관세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적극 이용해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원자재 재고 관리

수입세 면세 원재료의 재고 관리는 베트남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수출입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관세당국은 통관후검사 시 면세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으며,

세관 통관내용과 기업이 보관 중인 재고내용이 상이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맺음말

2025년 베트남의 관세 및 통관제도는 디지털 혁신과 법·제도 개편, 무역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빠르고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내 진출기업과 물류·통관업계는 법령과 정책의 세부 변경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응원하며 베트남 수출입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본 칼럼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EU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제7009.92호(틀이 붙어 있는 거울)에 해당하는 물품 생산 시 제7001호의 원재료 외 다른 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 HS 제7009.9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답변	한·EU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비원산지 재료도 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7001호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 사용 시에는 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 사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7009.92호의 경우 한·EU FTA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개요

각 FTA에서는 물품의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다는 것, 또한 ②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협정별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C, 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으로 나뉜다.

실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의 대부분 영역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판단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해당 기준뿐 아니라 FTA에서 정한 원산지규정 전체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뉘는데, 공통기준은 FTA에 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그에 반해 특례기준은 대부분 협정별로 각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불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거나 상호 간 무역촉진을 위해 대부분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례기준을 두고 있다.

특례기준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정으로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이 있다.

(2)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FTA 원산지 판정 시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소허용기준 또는 미소기준으로 불리는 규정이 있다. 'De Minimis'의 어원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것들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으로 법원이 사소한 문제를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법리를 의미한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례기준으로 소개되는 사례가 많다.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도 적용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에서 미소기준을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봐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FTA 원산지 판정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산지 판정 방법이다.

세번변경기준에 관해 설명하면서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해당 물품을 한국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략을 2가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①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상대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방법

해당 원재료 자체를 '한국산'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다.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대상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이기 때문에 역내산 원재료가 되면 세번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FTA에 대해 역내산 원재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HS Code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도 아니고 적용 대상 FTA 당사국에서 수입된 물품도 아닌 경우(예를 들어 일본산) 그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 비해 미미한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배경은 쉽게 말하면 너무 엄격하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원재료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를 부정해 버린다면 실제 FTA를 체결할 당시 서로의 원산지 제품에 특혜를 적용하겠다는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준다는 것인데, '일정 수준 이하'나 '미미'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은 '가격'이다. 협정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협정에서 정하는 가격[공장인도조건(EXW, Ex-Works),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의 10%까지를 미소기준의 허용범위로 인정한다. 다만 섬유류의 경우 대부분 가격기준이 아닌 중량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산출한다(일부 협정은 가격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서만 활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확실한 안내사항은 아니다. 협정별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ASEAN FTA	한·EU FTA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10조(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특정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부속서상 규정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RVC 요구조건에 대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된다.**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제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ASEAN FTA는 미소기준에 대해 ①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미소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②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미소기준에 대해 ①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는 표현 등 특정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만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② 부가가치기준에서는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EU FTA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든 상관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106.90호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HS Code	품명	원산지 결정기준
제2106.90호	기타 조제식료품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subheadings 1211 20 and 1302 19 used are wholly obtained**,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4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s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해당 규정은 4가지의 조합기준인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이 중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 물품'에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는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구분해 미소기준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허용기준 내에서 비원산지 재료(HS 제1302.19호)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에서 "사용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다. 제150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HS Code	품명	원산지 결정기준
제1501호	돼지의 지방과 가금의 지방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에 해당하는 돼지고기와 돼지의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506호에 해당하는 뼈는 사용될 수 없다.** Manufacture from meat or edible offal of swine of heading 0203 or 0206 or of meat and edible offal of poultry of heading 0207. However **bones of heading 0506 may not be used.**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한·EU FTA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비원산지 재료라 하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제7009.92호(틀이 붙어 있는 거울)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할 때 제7001호의 원재료 외 다른 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일단 소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한·EU FTA 부속서 2에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식 명칭은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in order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can obtainoriginating status)'이다.

이에 따라 한·EU FTA에서의 가공공정기준은 원산지 제품으로 판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목록에 기재돼 있는 것이다.

질문 & 답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7009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과 동시에 미소기준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제7009호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유리거울(glass mirror)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은 은이

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coated)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돼 있다.

은도금 방법(silvering method), 백금침전방법(platinum deposition process) 등의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제7009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이나 벽걸이식 거울 포함); 주머니용 거울(보호용 케이스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이나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 (판지·직물 등으로) 받친 것이나 틀을 (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마루나 지면에 설치하도록 만든 거울[예 : 양복점의 탈의실(fitting room)이나 양화점에서 사용하는 큰 전신거울(cheval-glass)이나 스윙거울(swing-mirror)]도 제94류의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7009호에 분류한다.

제7009호에는 또한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울도 분류한다(거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틀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다만, 인쇄된 그림이 거울로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리장식품으로서 제701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94류에 속하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된 거울(예 : 옷장의 문)은 그 가구와 함께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한·EU FTA에서 거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에서 규정하는 '틀이 붙어 있는 거울(제7009.9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명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제7009.92호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001호에는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가 분류되며, 결국 해당 원산지 기준은 제7001호의 유리 괴나, 파유리 등으로부터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1항에서는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고,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돼 있다.

비원산지 재료는 실무적으로 한국과 EU산 물품이 아닌 제3국의 원재료뿐 아니라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없는 한국 또는 EU 제조 원재료 또한 비원산지 재료로 판정된다.

이에 따라 거울의 생산공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울 생산에는 유리 외에 질산은, 구리, 페인트, 여러 가지 재질의 프레임(틀) 등이 부품으로 투입될 것인데, 이러한 원재료들은 ① 간접재료 등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재료이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시 고려돼야 하고, ② 제7001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당 원재료들에 대해서는 역내산 판정을 받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여러 가지 원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EU FTA에서는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의정서 제5조 제2항에서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7001호에 해당되지 않은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해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중간재나 간접재료 등 기타 특례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만약 제7001호가 아닌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미소기준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7001호가 아닌 유리가 사용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거나 중간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울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7005호[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원재료로 사용됐다고 가정한다.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협정명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제7005호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만약 제7005호의 물품을 국내에서 납품받았다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다. 제7005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7009호에 비해 원산지 판정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7003호[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재료를 납품받아 물품을 직접 제7005호의 유리로 제조하는 경우 제7005호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할 수 있다. 제7005호는 원산지 재료가 됐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 재료인 제7005호를 통해 제7009호의 유리거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1항 가목에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라며 'ROLL-UP'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로 제7228호[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인데,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7206호 등에 대한 원재료만 비원산지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비원산지 재료인 일차재료 제7202호, 제7205호를 사용해 반제품인 제7206호, 제7207호를 생산한 경우 그 반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반제품은 원산지 재료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의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상 원재료가 제7202호, 제7205호인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도 등 제조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제품(제7206호, 제7207호)이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최종 생산품인 제7228호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EU FTA의 일부 산업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를 한정한 규정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원산지 결정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재료가 간접재료, 부속품 등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재료인 경우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는 재료로서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는 중간재규정, 최소허용기준, 간접재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 실제 원산지 판정 시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 전기온수기의 수입요건

제8516.10-0000호에 분류되는 전기온수기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8516.10-0000호에 분류되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전기온수기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방폭형은 제외).
   -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수출 / 외교행낭 물품 수출신고

외교행낭 물품을 항공으로 수출할 때 수출신고 면제 대상이 되나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식수출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 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 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 등'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되므로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세관장 확인 물품이 아니라면 간이하게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통관 / 향수 해외 직구

향수 해외 직구 시 면세통관 가능한 60ml 기준은 병 개수 관계없이 총합계 용량 60ml 이하를 의미하는 건가요?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향수 면세통관 범위는 자가사용의 것으로, 병 개수와 관계없이 총용량이 60ml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총 2병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2병의 합계 용량이 60ml 이하여야 합니다.

쟁점물품(MOTOR 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결정번호 : 조심2024관0095(2024.10.29)
청구법인 : ○○○
주 문 : 1. ○○세관장이 2024.4.25. 및 2024.5.1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 및 ○○○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2.부터 2021.10.26.까지 중국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8건으로 케이싱(CASING)이 부착되지 않은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DRAIN PUMP MO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교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1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2.4~4%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모델명 NTWC021S02)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HSK 제8501.10-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모델명 DC31-00030G)을 HSK 제8413.70-9090호(그 밖의 기타 원심펌프, FCN1 4.2~5.3%)로 분류하여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5.26. 기존 사전회시물품(모델명 NTWC021S02)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1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세관장)은 2022.6.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4.22. 및 2024.5.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01.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표1> 생략]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와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2024.4.25. 및 2024.5.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배수용 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로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등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HS해설서 제8501호 (Ⅰ) 전동기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 <중략> ···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전동기이고, 부가적으로 부착된 축과 임펠러는 회전력을 유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 해설서에 따르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품이 장착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전동기에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4838, 2020.5.28. 등)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해당 전동기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 펌프나 밸브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01호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과-7633, 2021.9.28. 등 다수)가 존재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모터로 구성되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

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터는 기본적으로 rotor(회전자), stator(정지자), 코일, shaft 등으로 구성되고, 영구자석에서 형성된 자계가 코일에 전달되며, rotor와 stator 간 생성된 자계가 상호작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펌프는 모터나 기타 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을 얻어 유체를 흡입하여 토출하는 유체 이동이 주된 기능이다. 상업적으로 펌프나 모터가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펌프의 동력원이 되는 모터가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해당 가격의 비중 또한 높아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하는 모터와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 유체를 기계내부로 흡입하여 유체에너지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펌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펌프 케이싱 내부의 모터에서 전달받은 기계적 에너지의 회전자가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유체에 각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액체 수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펌프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심펌프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나, 케이싱은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수입 이후 국내 조립 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 후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세탁기용 드레인 펌프(원심펌프) 가격(개당 납품가 ○○○원) 중 케이스, 토출구, 흡입구 등 국내 추가 조립비용이 51.1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펌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① 흡입구, ② 회전체(임펠러), ③ 토출구, ④ 케이싱, ⑤ 모터이고, 쟁점물품은 모터와 회전체가 결합된 것이므로 모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훨씬 더 크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펌프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쟁점물품을 펌프의 미완성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1)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 원칙이고,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 내지 제5호를 예외적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각 호를 결정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주 및 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의 부분품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대상물품을 ①~⑲까지 나열하면서 이들 중 ①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및 ⑧ 제8501호의 전동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제84류 및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시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의 경우에는 해당 특게호로 분류하되, 이는 최상위 제품의 부분품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류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명시한 것이다.

(3) 이러한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입하면, 제16부 주 제2호(통칙 제1호) 규정은 세탁기용 펌프의 분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펌프용 모터의 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및 이에 관한 총설 해석에 따라 특정한 호인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품목분류4과-3450, 2022.5.23.)은 수입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오인한 것이다.

(1) 펌프는 전동기와 케이싱, 흡입구, 토출구, 커버 등으로 구성되고, 케이싱은 압력용기 및 지지물로서, 유체를 수용하는 구조물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체에 가해진 운동 에너지(=속도)를 압력 에너지(=유체 압력)로 유효하게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케이싱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체(액체, 기체)를 담을 공간이 없고, 이에 압력을 가해 유체를 이송할 수도 없다. 또한, 흡입구, 토출구는 케이싱과 결합하여 유체의 유입·배출 통로가 되는 것으로, 흡입구·토출구의 구경 비율에 따라 펌프의 성능이 좌우되는 주요한 부품이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제시 물품이 케이싱과 흡입구·토출구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전동기에 임펠러만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인 전동기와 펌프 몸체, 임펠러, 축, 오링 등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해당 물품은 전동기와 임펠러만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제시되었을 뿐, 상기한 펌프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통칙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펌프로 분류하는 것은 펌프의 구조상 필수적인 흡입구, 토출구, 케이싱, 하우징 등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임펠러가 부착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모터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넘어선다고 본다면 펌프로서의 미완성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고시일(2022.5.26.)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자율점검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8.부터 2014.5.9.까지 유사물품을 펌프(관세율표 제8413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4.6.23. 이후부터 계속하여 모터(관세율표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HSK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나, 위 2차례의 수입신고는 쟁점물품의 개발과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된 케이싱이 있는 펌프 완성품과 펌프용 부속품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다. 해당 수입 건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펌프 완성품이 아닌 모터 단품으로 공급 방향이 결정되면서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종료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전제에 터 잡은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1호로 분류(품목분류3과-11785, 2022.2.10. 외 다수)하였고, 유사한 다수의 물품을 일관되게 관세율표 제8501호로 결정(품목분류3과-2744 2014.12.17. 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6.23.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들을 참고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의 모터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 「관세법」 제86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유도하면서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쟁점고시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고시에 의해 변경된 펌프의 세율(4.2~5.3%)이 모터의 세율(2.4~4%) 보다 높으므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반대로 위 규정은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펌프의 세율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바)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를 제시하며 쟁점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이 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면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같은 법 제87조 제4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판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조항의 개정 취지에서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미래효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한적인 소급효를 허용[(예) 고→저세율로 품목분류 변경 시, 저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한다"고 나타나므로 변경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인용 판례는 「관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만 소급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주 규정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에 대한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2.3.부터 지속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모터+회전력 전달부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일관되게 결정해 왔으며, 관세율표 제8413호의 펌프 완제품으로 분류 결정한 사례들은 펌프 케이싱을 갖춘 형태의 물품들이다.

나) 수출입신고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이에 따른 변경고시(2022.5.26.)를 기점으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변경고시 전까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

(1)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이뤄지는 제조공정을 보면,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이미 완성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원심펌프의 핵심기능이 되는 부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도 기존 쟁점물품과 같이 케이싱이 없는 유사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고(품목분류4과-10845, 2019.7.26. 등),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케이싱 없이 제시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다(NLRTD-2011-001257, 2011.5.31.).

나)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C) 원심펌프를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의 원주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 <중략> ···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오수 배출용 펌프로 '一'자 형태의 4매로 구성된 임펠러가 있는 쟁점물품은 호 해설에 따라 기타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 <중략> ··· 쟁점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관27·28·29·30(병합), 2023.8.23.].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12.3.8.부터 2014.5.9.까지 쟁점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펌프(관세율표 제8413호)로 신고하였고, 2014.6.23.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모터(관세율표 제8501호)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6.23. 이후부터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다른 업체의 2020.2.10.자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할 신뢰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펌프로 수입신고하다가 모터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입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적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시일 이전에 모터로 회신한 사례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변경된 품목번호는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급과세금지에 따라 변경고시일(2022.5.26.) 이후 수입신고 건에만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쟁점고시의 물품과 모델·규격 등이 상이하므로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변경된 품목분류(펌프)'의 적용세율이 '변경 전의 품목분류(모터)'의 적용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변경 후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관세법」 제86조 제5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소급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인한 것이다.

라) 대법원은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변경된 품목번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고시일 이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펌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오해에 따른 것으로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수입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불완전한 또는 미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073, 2018.3.2.)가 다수 존재하므로 통칙 제2호를 적용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원고와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귀책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고, 원고는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두58281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신고를 잘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1호(FCN 2.4~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원심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3호(FCN 4.2~5.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로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여 부착된 임펠러를 회전하여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부 케이싱이 미부착된 불완전한 상태로 수입되었다.

(1) 원심펌프는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가 샤프트(축)를 회전시켜 축의 끝에 달린 임펠러를 회전시키고 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이 케이싱 속에 있는 물에 전달되어 액체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흡입구로는 물을 빨아들이고 토출구로는 압출되도록 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2) 원심펌프의 구성은 크게 모터와 회전체, 케이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회전체는 동력을 임펠러로 전달하는 주축, 회전체의 중량을 지지하면서 축의 추력을 받아내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는 베어링, 마지막으로 원심력으로 양수 기능을 발생시키는 임펠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 <표2>와 같다.

● <표2> HSK 및 적용 관세율 ●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70	그 밖의 원심펌프		
9090	기타	기본 8% FCN1 (2019~2021) 4.2~5.3%	처분청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0	교류 전동기	기본 8% FCN1 (2019~2021) 2.4~4%	청구법인

다) 쟁점물품 관련 HS해설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 <표3> 제8413호 및 제8501호 HS해설서(발췌) ●

■ 제8413호 해설서

(C)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 제8501호 해설서

(Ⅰ) 전동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 <중략>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샤프트(shaft)·프로펠러(propeller)·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MOTOR; NTWC021S02)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전동기에 해당하는 HSK 제8501.10-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품목분류3과-11785).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쟁점물품과 유사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그 밖의 원심펌프'가 해당하는 HSK 제8413.70-909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2022.5.26. 기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 사전회시(품목분류3

과-11785, 2020.2.10.)한 전동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HSK 제8501.10-1000호에서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22-21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동기에 단순히 임펠러만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기로서의 본질적 특징이 있으므로 유체의 흐름을 위한 펌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변경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인용 판례는 「관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22.5.26.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고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관136, 2011.12.29.),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해석 및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87조 제4항의 신설 조항(현행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펌프)'의 적용세율이 '변경 전의 품목분류(모터)'의 적용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3과-2744, 2014.12.17. 등 5건)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기존에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모두 전동기에 케이싱이 부착된 펌프인 것으로 나타나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위 물품과 유사한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5.26.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0.2.10.자 사전심사회시 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서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8410호[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and regulators therefor)]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천안세관 조사심사과장

[해설 요지]

제8410호에는 크게 (1) 수력터빈·수차그룹과 (2) 수력터빈·수차의 조정기(부분품)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1) 수력터빈·수차그룹은 다시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B) 수차(water wheel)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조정기는 유량, 회전속도, 출력 등을 조절해 터빈 또는 수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준다.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소그룹의 기기는 로터(rotor)의 날개 등에 물의 분사가 직접 부딪치도록 스테이터(stator) 내에 봉입된 로터로 구성되며 주로 수력발전용 시설에 사용한다. 수력터빈의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발명가의 이름을 딴 펠톤(pelton), 프랜시스(francis), 카플란(kaplan), 터고(turgo), 조블(jonval), 고르글로(gorglow), 타이슨(tyson) 터빈 등이 있다.

(B) 수차(water wheel) 소그룹의 기기는 매우 간단한 엔진으로 수동 또는 간단한 수문, 도수로로 유량을 조절하므로 자동 조정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직접 소규모의 공장·제재소·제분소 등에서 동력으로 사용한다. 회전방식에 따라 오버샷, 브레스트샷, 언더샷으로 나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프란시스 터빈, 카플란 터빈, 펠톤 터빈, 터고(turgo) 터빈, 관형(tubular) 터빈, 크로스 플로우 터빈, 복원수력 터빈, 마이크로 수력터빈과 이들의 조정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액체의 압력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터빈이나 수차의 럴너, 블레이드 패들에 작용시켜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것은 제8410호로 분류하고, 증기나 공기만 사용하는 터빈과 유압을 단순히 제어용(액추레이터, 실린더 등)으로만 사용하는 기기와 액체의 압력에너지가 직접 동력변환에 쓰이지 않는 기기 등은 제8412호 등으로 분류한다.

수력발전의 출력 공식은 P(발전출력)=p(물의 밀도)×g(중력 가속도)×Q(유량)×H(낙차)×n(효율)이다. 조정기는 가이드 베인·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해 발전출력을 제어하는 기기이며 제어가 가능한 실질적인 요소는 유량이다. 6단위 소호의 구분 기준인 '동력'은 발전출력을 말하며 여기서 출력이란 정격출력(Rated power)을 말한다.

소호의 용어에 수력터빈과 수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기기는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기임을 의미한다. 반면 해설서에 구분하고 있는 것은 수력터빈과 수차의 구성요소, 작동 원리, 기술적 특성, 용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차는 국제 거래가 무의미한 수준이므로 현재의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나 소호의 용어로 규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

조정기는 수력터빈의 가장 중요한 부분품이며 호의 용어에 규정한 물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가목(특정한 호 분류규정)을 적용해 제8410호로 분류한다. 조정기를 제외한 수력터빈과 수차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2호 나목(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해 제8410호로 분류된다.

1. 분류 체계

1) 호의 구성

제8410호에는 크게 (1) 수력터빈·수차그룹과 (2) 수력터빈·수차의 조정기(부분품)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1) 수력터빈·수차그룹은 다시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B) 수차(water wheel)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호에는 그 자체로 물의 흐름, 낙차, 압축된 액체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 동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인 수력터빈과 수차가 분류된다. 또한 수력터빈이나 수차의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로 주로 유량, 회전속도, 출력 등을 조절해 터빈 또는 수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조정기(governor)를 포함한다.

수력원동기는 물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다. 수력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방식으로는 수로식, 댐식, 댐-수로식, 양수식 등이 있다.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소그룹의 기기는 로터(rotor)의 날개 등에 물의 분사가 직접 부딪치도록 스테이터(stator) 내에 봉입된 로터로 구성되며 주로 수력발전용 시설에 사용한다. 수력터빈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흐르는 물의 위치에너지가 유속으로 전환되고, ② 노즐을 통해 제어된 유속과 유량이 터빈의 블레이드를 회전시킨다. ③ 블레이드의 회전은 회전축을 통해 발전기 또는 기계와 연결돼 전기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수력터빈의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발명가의 이름을 딴 펠톤(Pelton), 프랜시스(Francis), 카플란(Kaplan), 터고(Turgo), 조블(Jonval), 고르글로(Gorglow), 타이슨(Tyson) 터빈 등이 있다. 그

외에 관형(Tubular, 축류형 포함), 아르키메데스 스크류(Archimedes Screw), 사류(Cross-flow, Banki), 사행정, 이중행정 터빈 등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중요한 터빈을 요약하자면 ① 펠톤(Pelton)은 비교적 수량이 적고 고압의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 ② 프란시스(Francis)는 수량이 풍부한 중간 정도의 압력이나 낮은 압력의 물에 사용하며, ③ 카플란(Kaplan)은 낮은 압력의 물 공급에 사용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대부분 프란시스 터빈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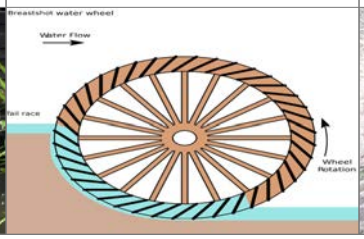
(B) 수차(water wheel) 소그룹의 기기는 매우 간단한 엔진으로 수동 또는 간단한 수문, 도수로로 유량을 조절하므로 자동 조정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수차는 휠(wheel) 주위에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평판이나 중공(hollow)의 물갈퀴가 부착된 대형의 휠로 구성돼 있고 휠 축(axle of the wheel)에는 보통 가속 기어가 부착돼 있다. 대부분 직접 소규모의 공장·제재소·제분소 등에서 동력으로 사용한다. 회전방식에 따라 오버샷, 브레스트샷, 언더샷으로 나뉜다.

오버샷은 물이 수차의 윗부분(Over the top)에서 떨어져 회전시키는 방식이며, 언더샷은 물이 수차의 아래(Underneath)를 지나가며 회전시키는 방식이고, 브레스트샷은 물이 수차의 중심(가슴, breast) 부분에 충돌해 회전시키는 방식이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프란시스 터빈, 카플란 터빈, 펠톤 터빈, 터고 터빈, 관형(tubular) 터빈, 크로스 플로우 터빈, 복원수력 터빈, 마이크로 수력터빈, 피코 수력터빈과 이들의 조정기 등이 있다.

2) 제8410호의 다양한 기기

프란시스 터빈	카플란 터빈	펠톤 터빈
		
터고 터빈	**관형(tubular) 터빈**	**교차흐름(cross flow) 터빈**
		

피시세이프(FishSafe) 복원 수력터빈	파력 터빈(제8412호와 경합)	피코마이크로 수력터빈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터빈	ORC 터빈	오버샷(Overshot) 수차
		
브레스트샷(Breastshot) 수차	브레스트샷 수차 작동원리	언더샷(Undershot, 하사식) 수차
		

3) 제8410 소호의 구성

제8410 소호는 품목에 따라 5단위 소호를 ① 수력터빈과 수차, ② 조정기를 포함한 부분품으로 세분화하고, ① 수력터빈과 수차에 대해 동력을 기준으로 6단위 소호를 다시 ①-①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과 ①-②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①-③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세분화한 총 3개로 간략하게 구성했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10.1 - 수력터빈과 수차
- 제8410.11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제8410.12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제8410.13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제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제8410호 HSK의 구성

① 제8410.1 - 수력터빈과 수차는 대부분 소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HSK를 규정했다. ② 조정기를 포함한 부분품 것의 경우 조정기와 수력터빈의 것으로 나눠 세분화했으나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2. 관련 규정

제8410호의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10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10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제84류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84류 총설

(D) 이 류의 둘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

… <중략> …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에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와 장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그 밖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와 장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이나 활용 분야에 따라 열거하였다.

■ 제8412호의 용어 및 해설

84.12 - 그 밖의 엔진과 모터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 : water wheel)·터보제트(turbo-jet)·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3. 주요 쟁점사항

제8410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압이나 특수 액압에 의한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하는 수력터빈과 수차란?
2) 제8410 소호에 규정된 동력의 계산과 관련 요소는?
3) 수력터빈과 수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4) 제8410.90 소호에 분류되는 조정기 등 부분품의 분류규정 적용과 포함되는 물품은?

1) 유압이나 특수 액압에 의한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하는 수력터빈과 수차란?

제8410호의 용어는 '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이며, 이를 '수력터빈과 수차'로 번역했다. 여기서 'Hydraulic turbines'를 수력터빈으로 번역하는 것은 맞아 보인다. 부연하자면, 수력터빈과 수차는 일반적으로 물의 위치에너지 또는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전통적으로 수차와 수력터빈은 자연수(물)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제8410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자체로 액체의 이동이나 압축된 액체(예 : 물의 흐름이나 낙차 ; 수압·유압이나 특수 액압)에 의하여 얻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수력터빈과 수차(水車)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나 낙차, 수압은 당연한데 "유압이나 특수 액압"은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Hydraulic'은 '유압의 또는 수압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Hydraulic turbines'를 유압터빈, 수력터빈 또는 수압터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유압터빈은 기계유를 사용하는 유압시스템에서의 회전체를 의미하므로 제8412호의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8410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압이나 특수 액압에 의하여 얻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수력터빈과 수차"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8410호 해설서의 "이들 엔진(engine)이나 모터(motor)는 휠(wheel)에 붙은 물갈퀴·날개나 나선 모양의 기구에 대량의 물을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된다"라는 해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휠(wheel)에 붙은 물갈퀴·날개나 나선 모양의 기구에 대량의 물을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작동하는 유압이나 특수 액압의 터빈은 제8410호의 'Hydraulic turbines, water wheels' 범주에 포함된다. 'Hydraulic'이 '유체 역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석유화학공업의 정제공정에서 배출되는 고압 오일의 잔여 압력을 터빈으로 회수하는 유체 구동터빈이나 ② 지열로 가열된 암모니아나 메탄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특수 유체터빈은 특수 액압을 사용하는 터빈이다.

* 해수가 아닌 오일(oil)을 매개체로 사용해 해수의 파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파력발전(ocean wave energy)터빈 등이 제8410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8412호 해설서에 "파도나 바다물결의 힘을 이용하거나[두 개의 반원통형의 블레이드(blade)를 붙인 사보니우스 로터(Savonius rotor)를 이용한다] 조수(tide)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동력을 생산"하는 터빈은 제8412호로 분류한다고 돼 있어 경합이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액체의 압력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터빈이나 수차의 럴너, 블레이드 패들에 작용시켜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것은 제8410호로 분류하고, 증기나 공기만 사용하는 터빈과 유압을 단순히 제어용(액추레이터, 실린더 등)으로만 사용하는 기기, 액체의 압력에너지가 직접 동력 변환에 쓰이지 않는 기기 등은 제8412호 등으로 분류한다.

2) 제8410 소호에 규정된 동력의 계산과 관련 요소는?

제8410.1 5단위 소호에 수력터빈과 수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8410.11 소호와 제8410.12 소호 및 제8410.13 6단위 소호는 '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 기준인 '동력'은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소호를 구분할 수 있다.

수력발전의 출력 공식은 P(발전출력)=p(물의 밀도)×g(중력 가속도)×Q(유량)×H(낙차)×n(효율)이다. 여기서 밀도와 중력가속도는 물리적 상수이고, 낙차는 보통 고정돼 있으며, 효율은 발전기 시스템의 기계적·전기적 효율이다. 이는 조정기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제8410호의 용어에 규정된 조정기는 가이드 베인·블레이드 각도를 조절해 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기기이며 제어가 가능한 실질적인 요소는 유량이다.

정리하자면 6단위 소호의 구분 기준인 '동력'은 발전출력을 말하며, 여기서 출력이란 정격출력(Rated power)을 말한다. 또한 조정기는 발전출력의 요소인 유량을 제어하는 기기다.

다만, 조정기의 역할은 단순히 유량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량 제어를 통해 속도, 출력, 주파수, 부하 대응,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유량이고,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효과는 속도 안정화, 과속·저속 방지, 출력 및 주파수 조정, 과부하 보호 등이다.

3) 수력터빈과 수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제8410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A) 수력터빈(hydraulic turbine), (B) 수차(water wheel) 소그룹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8410.1 5단위 소호에는 '수력터빈과 수차'를 소호의 용어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

소호의 용어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력터빈과 수차는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기기임을 의미한다. 반면 해설서에 구분하고 있는 점은 수력터빈과 수차의 구성요소, 작동 원리, 기술적 특성, 용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율표는 큰 틀에서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반면, 해설서는 세부 기술적 차이를 반영해 상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위의 목적에 따른 수력터빈과 수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통점	차이점
기능 및 원리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 회전운동을 생성	수차는 주로 전통적 기계로 중력 및 물의 운동에너지 활용, 수력터빈은 현대적 기술로 다양한 에너지 변환 원리(압력 차, 제트 흐름 등)를 적용
관세율표 분류	단위 소호에서 함께 규정	해설서에서 별도의 소그룹으로 구분해 기술적 및 구성요소 차이를 반영
용도 및 산업적 사용	물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	수차는 소규모, 농업·제분 등 과거 산업 중심으로 상업적 가치 무의미, 수력터빈은 대규모 전력 생산용으로 고도화돼 상업적 가치 높음.
기술 발전 수준	기초적 물 에너지 회전 변환 장치	수차는 단순 구조, 수력터빈은 정밀 설계 및 고효율화 추구, 첨단 소재 적용
국제 거래 및 경제성	-	수차는 국제 거래가 무의미한 수준. 수력터빈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국제 시장에서 중요 품목

따라서 현재 관세율표상 수차는 호의 용어나 소호의 용어로 규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 다만, 제84류의 관세율표 체계상 제8410호는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제84류 주 제2호 참조)이므로 '물을 이용한 동력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이 분류된다는 의미가 있다.

4) 제8410.90 소호에 분류되는 조정기 등 부분품의 분류규정 적용과 포함되는 물품은?

제8410호의 용어는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다. 조정기는 수력터빈의 가장 중요한 부분품이다. 그러나 조정기는 호의 용어에 규정한 물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가목(특정한 호 분류규정)을 적용해 제8410호로 분류된다.

조정기를 제외한 수력터빈과 수차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2호 나목(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분류규정)을 적용해 제8410호로 분류된다.

제8410호 해설서에 이 호로 분류되는 부분품으로 "로터(rotor)·스테이터(stator)·블레이드(blade)와 버켓(bucket)·케이싱(casing)·조속기(regulator)·조속기용의 밸브니들(valve needle)"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들 부분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로터(Rotor)	물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
스테이터(Stator)	유체의 흐름을 안정화하고 회전하는 로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고정 부품
블레이드(Blade)	로터 또는 스테이터에 장착돼 유체의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방향을 조절
버켓(Bucket)	충격식 수차(예 : 펠톤 터빈)에서 물줄기를 받아 회전을 발생시키는 움푹 팬 모양
케이싱(Casing)	유입되는 물을 러너에 균등하게 분배해 압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선형 도관 구조
조속기(Regulator)	부하 변화에 따라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물의 유량이나 블레이드 피치를 자동 조절
밸브니들(Valve Needle)	조속기의 일부로, 물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절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유청단백 가수분해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유장(乳漿)은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난 뒤 남은 액체를 말하는데, '유청(乳淸)'이라고도 한다. 우유에서 지방과 단백질 일부인 카제인이 응고하면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치즈이며, 단백질에서 카제인을 걸러낸 부산물이 바로 유장이다. 우유는 약 12%가 고형질로, 그 중 약 25%가 단백질을 포함하고 그 가운데 약 20%가 유장이다. 즉, 우유 1ℓ에 든 유장단백질은 6g 정도 들어있다.

유장단백질은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기도 했다. 남은 유장을 비료로 쓰거나 분말건조해서 사료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취급이 곤란해 그냥 버리기 일쑤였다. 특히 대규모 낙농업 국가의 경우 치즈를 만든 뒤 남은 유장단백질을 버리는 양이 많았다. 이렇게 버려진 유장단백질로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수질이 오염되자 결국 유장 배출량 규제까지 생겼다.

환경오염으로 규제가 생긴 이후 유장단백질은 식재료나 단백질 보충 성분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기능성 식품처럼 알려지며, 이유식 및 건강식품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다. 리코타 치즈의 재료이기도 하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유장을 가수분해해 만든 저분자 단백 가수분해물로 '밀크알부민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제3502.20-0000호로 신고했다.

제3502호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乳漿, whey) 단백질을 함유하고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는 유장(乳漿)단백질 농축물도 분류**한다. 유장(乳漿) 단백질 함유량은 질소함유량에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 6.38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하인 유장단백질 농축물은 제04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건조물 기준 단백질의 함유량이 80% 이상인 유장단백질 농축물의 경우는 제3502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물품은 **유장단백질을 가수분해**해 만든 것에 해당하는데, 유장 가수 분해는 효소나 산을 이용해 단백질 분자를 더 작은 폴리펩타이드나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유장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1) 펩톤(peptone) : 단백질을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하거나 특정한 효소(펩신·파파인·판크레아틴 등)를 작용시켜서 얻어지는 가용성 물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경우에는 제3504호에 해당하는 펩톤 혹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의 경우 유장단백질을 가수분해해 농축한 것으로 제3504.00-2090호로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MILK ALBUMIN,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3502.20-0000 (FCN1 3.6%)	Whey protein concentrate, hydrolyzed	3504.00-2090 (FCN1 0%)

달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면?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매년 7월 20일은 '국제 달의 날(World Moon Day)'이다.

이날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1969년 7월 20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착륙일을 기념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최근에는 우주 탐사선들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비밀까지 밝혀내는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중국과학원(CAS) 지질·지구물리학 연구소 연구진은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채취해 온 샘플을 분석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달의 앞면에서 발견된 것과 성분과 시기가 유사한 고대 현무암이 뒷면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아폴로 16호가 1972년 4월, 달 착륙지점 인근에서 활동 중 수집한 샘플에서 발견된 저티타늄 현무암과 구성성분 및 형성시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서 채취한 샘플에는 현무암뿐만 아니라 감람석도 포함돼 있었다. 감람석은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되는 광물로 금, 은, 철 등 금속을 포함하는 자연에서 생기는 물질을 말한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다가올 유인 임무에서 달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귀중한 천연자원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지구의 일반적인 토양이나 흙 자갈 등은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에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우주선에 의해서 채취된 달 표면의 시료는 관세율표 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 제9705호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their grouping)·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43호_2025.8.18.

최신개정법령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입법예고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41호, 2025.8.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3호, 2025.7.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5-41호(2025.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634	2025-41호('25.08.13.)	MI BAND 3 등 2건	
635	2025-41호('25.08.13.)	AIR BAG COVER 등 3건	
636	2025-41호('25.08.13.)	PVA BRUSH 등 2건	
637	2025-41호('25.08.13.)	Vetra Res 등 38건	
638	2025-41호('25.08.13.)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639	2025-41호('25.08.13.)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634. MI BAND 3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MI BAND 3(XMSH05HM)	품목분류3과-15069 ('20.06.07)
2	SMART BAND; I6HR HEART RATE SMART BAND	품목분류3과-13160 ('20.03.31)

○ 물품설명

- 통신, 측정, 시계 기능이 가능한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1090호

○ 변경사유

- 통신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므로 통칙3 나를 적용하여 제8517.62-1090호에 분류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5. AIR BAG COV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AIRBAG DAB COVER GSUV OPEL	품목분류3과-4156 ('17.08.03)
2	COVER ASS'Y HORN, HORN COVER(ITEM CODE: 56150-F2000)	품목분류3과-6660 ('17.12.19)
3	EG HORN COVER LF ; HD2116-3D100	품목분류1과-2313 ('18.07.26)

○ 물품설명

- 에어백 커버 등으로 사용하는 차량 부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708.95-9000호

○ 변경사유

- 에어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95-9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6. PVA BRUS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② 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 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품목분류2과-264 ('04.02.19.)
2	② Symmetry MC PVA 33 ; Sponge Brush Roller ; MC-R010-0254 ③ Symmetry MC PVA ; Puck Brush 5.1 LH, RH ; MC-RPB-5.0 LH.RH	품목분류2과-311 ('04.02.24.)

○ 물품설명

- 돌기가 있는 기계용 브러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603.50-0000호

○ 변경사유

- 기계용 브러쉬에 해당하므로 제9603.50-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7. Vetra Res 등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사료 원료 3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tra Res	품목분류2과-14424 ('22.03.21)
2	EUCALYPSOL	품목분류2과-9127 ('21.09.23)
3	NECOTYL	품목분류2과-8530 ('21.08.31)
4	다이제맥스 EE	품목분류2과-6451 ('20.07.31)
5	LUCTAROM 78201Z	품목분류2과-3733 ('18.05.25)
6	AviPower2	품목분류2과-2774 ('18.04.19)
7	Luctarom 78053Z	품목분류2과-2204 ('18.03.29)
8	Luctarom L 78546Z	품목분류2과-11729 ('17.11.29)
9	Luctarom 78882Z	품목분류2과-11730 ('17.11.29)
10	Aviform PIC	품목분류2과-9202 ('17.08.22)
11	Aviform PIC Clean+	품목분류2과-9203 ('17.08.22)
12	Respira-Aid	품목분류2과-3120 ('17.02.22)
13	Mentofin	품목분류2과-16131 ('16.11.07)
14	민토렙 (MINTO-RESP)	품목분류2과-1561 ('16.02.17)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5	MIAROM-P	품목분류2과-7080 ('13.09.16)
16	DDC Milky Vanilla Flavor M16	품목분류2과-5061 ('13.07.17)
17	DDC Milky Vanilla Flavor M13	품목분류2과-5062 ('13.07.17)
18	DDC Raspberry F79	품목분류2과-5064 ('13.07.17)
19	Intra aerosol	품목분류2과-2521 ('13.04.18)
20	네이쳐 (Nature)	품목분류2과-9572 ('21.10.08)
21	Delistart S 2545	품목분류2과-3586 ('21.04.15)
22	MENARO M	품목분류2과-12465 ('17.12.21)
23	MENO FRU	품목분류2과-12462 ('17.12.21)
24	Luctarom L 78567Z	품목분류2과-7465 ('17.06.29)
25	NECTAROM FRUIT	품목분류2과-16127 ('16.11.04)
26	NECTAROM MILKY VANILA	품목분류2과-16126 ('16.11.04)
27	LUCTAROM SWEET 500 53862Z	품목분류과-100827 ('04.07.07)
28	ORSENTIAL EXTEND	품목분류2과-6764 ('20.08.12)
29	OREGANO OIL PREMIX	품목분류2과-884 ('12.02.08)
30	Next Enhance 150	품목분류2과-815 ('11.04.11)
31	Next Enhance 300	품목분류2과-814 ('11.04.11)
32	NE 150	품목분류2과-9150 ('17.08.18)
33	KOKCIDIN	품목분류2과-8991 ('17.08.11)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34	RESPICEL	품목분류2과-488 ('15.01.20)
35	아로멕스(Uitra-Care-Aromax)	품목분류2과-7543 ('13.10.07)
36	Uitra-Aromax-Dry	품목분류2과-7414 ('13.10.01)
37	Oilis HC	품목분류2과-3210 ('13.05.07)
38	DOSTO CONCENTRATE 500	품목분류2과-1206 ('13.02.26)

○ 물품설명

-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20호(1~27번),
제2309.90-2099호(28번~38번)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302.90-0000호(1번~38번)

○ 변경사유

-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제3302.90- 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8.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Women's jacket; PR.CHNA	품목분류4과-4707 ('18.10.02)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편물,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으로 만든 의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6102.30-1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6113.00-1000호

○ 변경사유

- 제5903호의 원단으로 만든 의류이므로 제6113.00-1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9.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1호(2025.8.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 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2400-0002; R.KOREA	품목분류4과-3462 ('18.07.27.)

○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적층한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5903.20-0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6001.92-0000호

○ 변경사유

- 파일편물에 해당하므로 제6001.92-0000호에 분류(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70, 2025.8.1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1)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

다.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안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9802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2
- 전자우편 : s9802102@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71, 2025.8.12.)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제품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 제품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폭이 2,0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904L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제품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1.6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s9802102@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